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방송기자연합회**
KOREA BROADCASTING JOURNALIST ASSOCIATION

 **한국여성기자협회**
KOREAN WOMEN JOURNALISTS ASSOCIATION

 **DART CENTRE**
ASIA PACIFIC

 Google News Initiative

서문) 왜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이 필요한가?	6	<박스1> 유가족 동의 여부와 초상권 이슈	27
1. 언론인 트라우마의 이해	12	2) 인터뷰 단계	28
1) 트라우마 반응의 특징	12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28
2) 대표적인 트라우마 반응은?	13	<사례2> 트라우마 관점에서 가장 힘든 ‘유족’ 취재	30
· 급성 스트레스 반응	13	<박스2> 1/3 인터뷰 법칙	34
<이미지1> 단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비교	14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35
· 만성적 트라우마 반응	15	<사례3> 트라우마 경험한 취재원의 예상치 못한 반응	36
<사례1> 언론인들이 경험한 대표적인 트라우마 반응	15	3) 취재 및 촬영 단계	37
3) 트라우마 위험 요인	16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37
<표1> 대표적인 트라우마 사건	17	<박스3> 정치적 양극화와 안전을 위협받는 언론인	37
4) 취재·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영향권은?	17	<박스4> 상대적으로 트라우마에 더 취약한 영상취재기자	38
<이미지2> 트라우마 파급 효과	18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39
5) 언론인 트라우마 특징	19	4) 기사 작성 및 편집 단계	41
<이미지3> 재난 충격의 피라미드	19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41
6) ‘세월호’ 보도 때 부각되기 시작한 트라우마 - ‘도덕적 상해’	20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42
<이미지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도덕적 상해’의 비교	21	<이미지6> 직접적인 현장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안을 보도한 사례	44
7) 최근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 유발 요인 - ‘언론인 온라인 공격’	21	<박스5> 10·29 이태원 참사 - 무엇을 보도하지 않을 지에 대한 논의 시작	44
2. ‘트라우마 리터러시’를 갖춘 취재·보도 및 언론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24	<이미지7> “참사 영상 원칙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언론들의 선언	45
1) 취재진의 사안 인식 단계	24	5) 보도 단계	45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24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45
<이미지5> 대표적인 안정화 기법 3-5-8 호흡법	25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46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26	<박스6> 언론인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 공감 및	48
		언론사·유관기관 차원의 본격적 대처 시작	
		6) 보도 이후의 단계	49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49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50
<사례4> 동료 간 심리적 외상 경험 공유와 관계적·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50
<박스7>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공격	51
③ 언론인 온라인 공격 대응 방안	53
<이미지8> 인포그래픽을 통한 해외 대처 사례- 조직 대처 방안 안내	56
<이미지9> 인포그래픽을 통한 해외 대처 사례- 개인 대처 방안 안내	57
④ 언론사의 평상시 트라우마 대비 방안	58
3.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2.0'을 위한 추후 논의 과제	64
[별첨] 뉴스룸 내 동료의 죽음이 발생한 경우	66
[참고문헌]	69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

김나래 국민일보 편집국 온라인뉴스부장 [한국기자협회 추천]
류 란 SBS 차장대우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박동혁 MBC 디지털뉴스룸 차장 [방송기자연합회 추천]
백소용 세계일보 산업부 차장대우 [한국여성기자협회 추천]
윤수희 KBS 통합뉴스룸 기자 [한국여성기자협회 추천]
이정애 SBS 미래팀장/ 부장 [위원장-다트센터 추천]
임원식 한국경제TV 기자 [한국기자협회 추천]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 자문단

노성철 일본 사이타마대 경제학부 교수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장]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 센터장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언론인 트라우마 실태 및 가이드북 1.0' 발표회 토론회

문일경 KBS 보도본부 전담 상담사
박재영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¹ 일시: 2023년 5월 19일(금) 14:30~17: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왜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이 필요한가?

한국 언론인도 더 이상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 10·29 이태원 참사², 튀르키예 강진 등 갈수록 안전과 트라우마 문제가 우려되는 현상으로 많은 한국 언론인들이 취재를 나르고 있다. 과거엔 찾아볼 수 없었던 언론인 개인을 겨냥한 무분별하고 공격적인 온라인 괴롭힘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으로 더욱 가속화하면서 대형 포털과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뉴스 소비가 늘어나고, 정치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확산 등으로 각종 이슈가 정쟁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비해 더디게 변화하는 언론사 특유의 조직 문화는 뉴스룸 내 소통 문제도 낳고 있다. 세대별, 성별 등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로 현장기자와 데스크 간에 취재 및 보도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적잖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강한 위계질서 아래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상명하복식 언론 문화 중 일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로까지 인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덕적 상해’³라는 새로운 유형의 트라우마도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언론인의 트라우마 문제가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것과 달리 해외에서 저널리즘과 연관된 트라우마 개념이 태동한 것은 1990년대초로 거슬러 올라간다.⁴ 언론인도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요원처럼 사건사고 현장에서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는 ‘심리적 외상 관점의 고위험군 직군’이라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국내에서는 방송기자연합회가 2011 방송기자 ‘여름호’에 닥센터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자 펠로우십 후기에 대한 기사를 실은 것을 시작으로, 저널리즘과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14년 4월 2일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아카데미 수습기자 과정부터 ‘사건 사고 취재와 트라우마 극복’ 관련 강의를 도입했다. 대형 재난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사고 취재 보도에서도 언론인들이 타인의 죽음과 고통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부터였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 ‘트라우마’에 대한 용어의 사용이나 인식은 커졌지만 언론인의 트라우마로까지 그 관심이 확장되지는 못했다.

2018년 미투 운동, 그리고 2019년부터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위 ‘좌표 찍기’와 ‘신상 털기’ 등 기사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의 수위가 높아졌다. 2020년 포털 사이트의 연예 뉴스와 스포츠 뉴스의 댓글창이 닫히면서 정치·사회 분야 뉴스 댓글창으로의 댓글 유입이 늘었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공격도 함께 증가했다. 특히 여성기자들을 겨냥해 댓글은 물론 온라인 박제 사이트나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조롱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의도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 유관기관이 본격적으로 ‘언론인의 심리적 트라우마’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2021년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닥센터, 구글뉴스 이니셔티브가 공동으로 첫 공식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한국기자들은 10명 가운데 8명(544명 가운데 78.7%)이 근무하면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건별로는 ‘희생자 가족 및 관련 단체 취재’, ‘아동학대 사건’,

²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를 두고 어떻게 호명하면 좋을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10·29’ 참사로 부르기로 한 언론은 해당 지역이 특정 사건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고,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지역명을 토대로 ‘이태원 참사’로 부르기로 한 언론은 해당 사건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발생한 특수성이 있고, 추모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지역의 이름이 같이 불리는 게 공동체 전체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언론사들이 참사를 어떻게 호명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본고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라 쓰기도 한다.

³ 도덕적 상해(Moral Injury)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경험으로, 의료계에서는 ‘도덕적 손상’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언론에서는 다시 복구되지 못하는 ‘손상’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강조해 ‘도덕적 상해’라 쓰기로 한다.

⁴ 현대 정신의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이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개념을 처음 정의하는데 일조한 프랭크 옥버그(Frank Ochberg) 미국 미시간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에 의해 언론인도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옥버그 박사는 1991년 닥재단의 후원을 받아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관련 저널리즘 학생들을 위한 첫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이후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위한 ‘닥센터’를 설립해 언론인들의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트라우마 스트레스 전문가들이 언론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도왔다. 현재 닥센터의 본사는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저널리즘 스쿨 산하에 있으며, 아시아지부는 호주 멜버른에 있다.

‘자살사건’, ‘대형화재 및 폭발·침몰 사고’, 그리고 ‘성범죄 사건’의 순으로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했다고 전했다.⁵ 성별로는 남성 기자가 77.5%, 여성 기자가 80.8%가 트라우마를 경험했다고 답해, 언론인의 트라우마 이슈는 남녀 언론인 모두를 아우르는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⁶

국내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가 언론인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주의를 환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많은 언론사들이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취재하고 달리 보도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현장취재 후 힘들어하는 언론인을 위한 심리 상담이나 의학적 진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지, 혹은 언론사가 보다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등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별 언론사가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닥터센터와 구글뉴스이니셔티브는 2022년 6월 트라우마에 대응하기 위한 TF인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를 만들었다.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과 트라우마 관련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시행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언론인과 트라우마 관련 첫 버전의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

취재 환경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 이슈가 대두하는 요즘,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의 이번 결과물이 한국 언론계가 트라우마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기자들이 좋은 보도를 보다 오래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이 건강해야 하고, 건강한 언론인이 건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론인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더 이상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언론사 조직 차원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호주에선 한 언론인이 지속적인 사건사고와 법조 취재로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게 된 뒤 기자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자 소속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이긴 사례도 나왔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 기업이나 조직이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단순히 비용이나 인력의 효율적 관리, 법률 리스크 대비 등에만 그치지 않는다. 언론사가 언론인뿐 아니라 취재원, 나아가 독자나 시청자의 심리적 안전까지 고려하는 ‘트라우마 공감 언론(Trauma-Informed Journalism)⁷’으로 나아갈 때, 사회로부터도 더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 6.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닥터센터, 구글뉴스이니셔티브 공동 TF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

5 사건사고 항목별 트라우마 경험 빈도를 0~4점(전혀 없음~매우 많이 있음)으로 점수를 매긴 뒤 평균값을 낸 결과, ‘희생자 가족 및 관련 단체 취재’가 2.80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아동학대’(2.63) 사건, ‘자살사건’(2.52), ‘대형화재 및 폭발·침몰 사고’(2.43), ‘성범죄’(2.38) 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2가끔 있음’ 단계부터 이상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및 분석 과정에 자문위원으로 함께한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트라우마 평균값이 2를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기자들이 업무상 트라우마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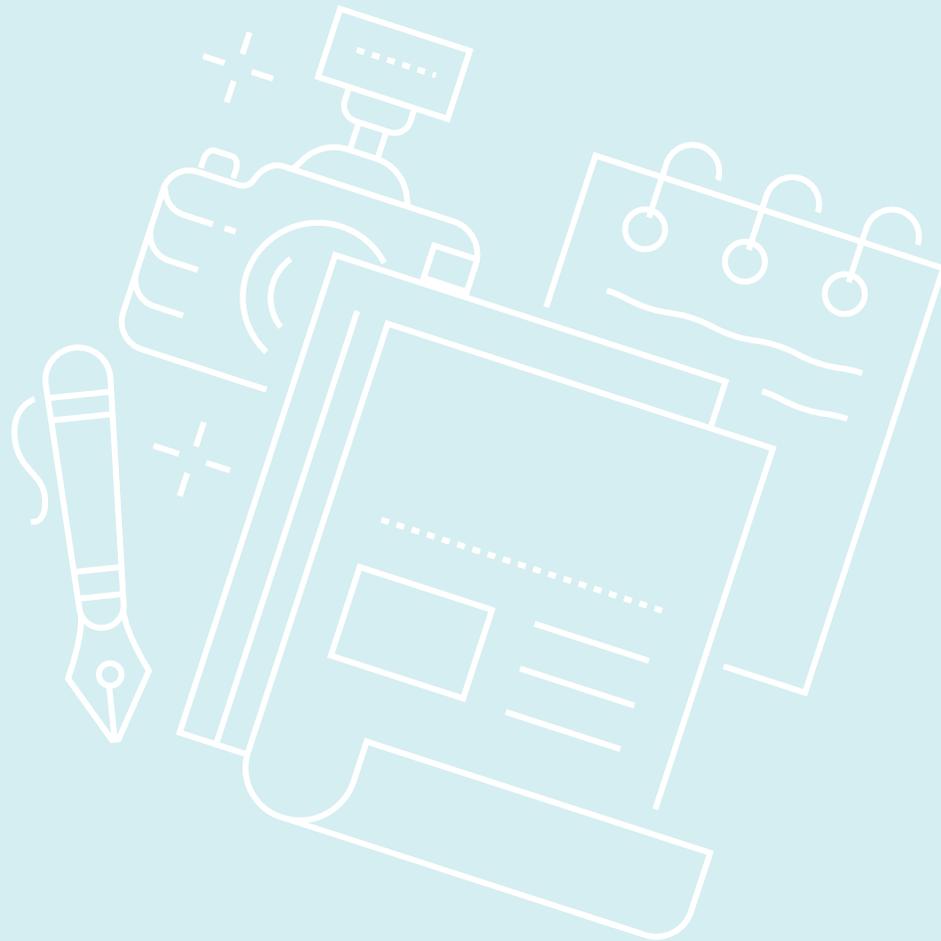
6 해외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에서 언론인의 성별에 따른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는 정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다만 성범죄 사건 취재의 경우에만 여성 기자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닥터센터, 구글뉴스이니셔티브의 설문조사에서도 성범죄를 취재하는 경우 여성 기자는 63%, 남성 기자 30.1%가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는 온라인 공격과 관련해 여성 언론인이 더 타깃이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7 Trauma-Informed Journalism에 대해 ‘트라우마 이해 기반 언론’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지적인 이해를 넘어 정서적 이해와 공감까지를 포함한다는 면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책임이사인 정찬승 선생이 강조하는 표현인 ‘트라우마 공감 언론’으로 쓰기로 한다.

01

‘언론인 트라우마’의 이해

- 1) 트라우마 반응의 특징
- 2) 대표적인 트라우마 반응은?
- 3) 트라우마 위험 요인
- 4) 취재·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영향권은?
- 5) 언론인 트라우마 특징
- 6) ‘세월호’ 보도 때 부각되기 시작한 트라우마 - ‘도덕적 상해’
- 7) 최근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 유발 요인 - ‘언론인 온라인 공격’



1. ‘언론인 트라우마’의 이해

‘언론인의 트라우마’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다.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드러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통상 언론인들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리해 취재하도록 요구받는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돌보는 대신 감추거나 오히려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기자 사회의 오래된 문화와 관행 때문에 트라우마⁸를 겪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기자 개인의 정신상태가 나약하거나 업무에 적응을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절도 있었다. 이런 연유로 ‘언론인의 트라우마’는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알려진 측면이 있다

1) 트라우마 반응의 특징

-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의 항상성⁹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몸에 저절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 죽음, 심각한 상해, 성폭력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뻔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APA¹⁰2013)
 - “소수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경험한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 트라우마 반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발생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난 뒤 경험할 수도 있다.

- 이번에는 관촬아도 비슷한 다른 사건 취재 때는 관촬지 않을 수도 있다.

2) 대표적인 트라우마 반응은?

단기적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 급성 스트레스 반응
 - :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 호흡이 가빠짐
 - :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예민한 상태 지속 (‘과각성(過覺醒)’)
 - : 충격적인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재경험’ 혹은 악몽
 - : 현실과 꿈의 경계가 혼동되는 ‘해리’ 현상
 - : 두통, 소화불량, 불면 등의 증세
 - : 불안감, 우울감, 비관적, 염세적 생각 등

인간에겐 타고난 회복력이 있어 트라우마를 겪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들은 대개 1달 안에는 관촬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언론인들은 일반인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한 달 후에도 ‘재경험¹¹’, ‘회피¹²’, ‘과각성¹³’,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¹⁴’ 같은 네 가지의 증상이 계속되고, 집안일이나 직장 업무, 대인 관계 등을 예전처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의심해야 한다.

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의학적 관점에서 제작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호 가이드라인’의 정의에 따르면 ‘트라우마(Trauma)란 일 반적인 스트레스 범주를 넘어서는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경험으로 사람의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을 의미한다.

⁹ 항상성이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여 개체 혹은 세포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¹⁰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 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 사용하는 정의로 국제 보건 기구에서 공인한 국제 질병 분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체계 중 하나이다. 2013년에 다섯 번째로 개정된 DSM-5가 출간되었다.

¹¹ ‘재경험’은 외상 사건이 끝난 뒤에도 사건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이 의식 속으로 자꾸 침투하는 증상이다.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나 꿈을 꾸고, 그 사건이 지금 당장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재현 경험을 하기도 한다.

¹² ‘회피’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을 떠올리지 않게 하려는 증상이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사람, 장소, 활동, 상황 등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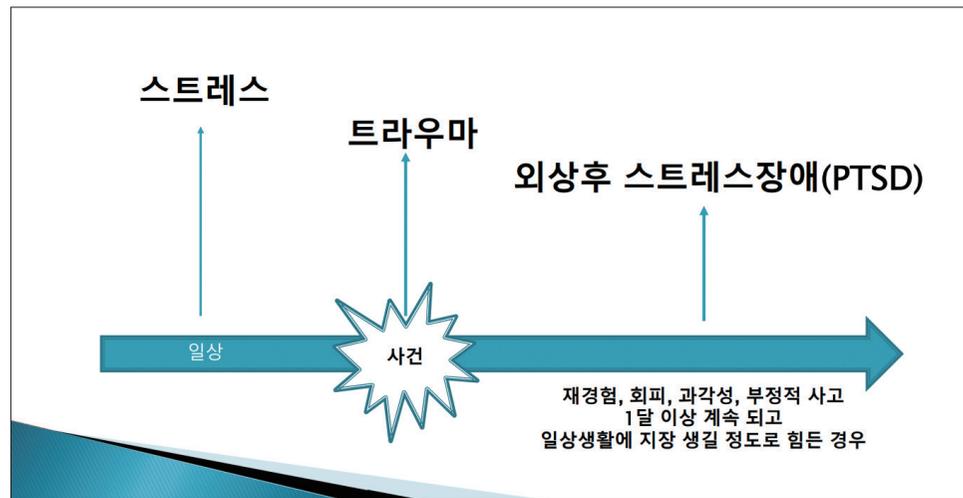
¹³ ‘과각성’은 과민하게 항상 주위를 경계하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놀라는 반응이다.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느껴 잠들기 힘들거나 숙면을 취하기 힘든 불면증을 겪을 수 있고, 작은 사소한 일에도 크게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표출하게 된다.

¹⁴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는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와 감정에 있어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외상 사건의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를 왜곡하여 받아들이므로써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한다. 자신과 타인 및 세상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인 신념을 나타내면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상황이 되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회복하기 쉽지 않고, 약물치료 같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이다. 치료를 받으면 개선될 수 있기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대신 혹은 최근엔 ‘외상 후 스트레스상해(PTS)¹⁵’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있다.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일상생활과 업무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건강이 악화되고 최악의 경우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간혹 사건을 경험한 후 한동안 잘 지내다가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 뒤늦게 PTSD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미지〉 단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비교



또 장시간 반복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될 경우 PTSD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만성적인 트라우마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 만성적 트라우마 반응

- : 극심한 피로
- : 짜증, 비이성적으로 갑자기 화를 내고, 감정이 격해짐.
- : 혹은 반대로 웬만한 사건, 사고에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무뎠짐. (무감각)
- : 주변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주변으로부터 고립되려는 경향
- : 매우 강렬한 공감과 감정 노동으로 “공감피로¹⁶”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신이 맡은 바를 잘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효능감의 저하 혹은 언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넘어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껴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더 돕지 못하는 상황 등에 회의를 느낌.
- : 무력감, 죄책감을 느껴 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을 보임.
- : 모든 것을 기억하거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음.

트라우마가 만성화되면 “세상은 살아갈 만하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같은 핵심 신념이 깨지면서 남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될 수 있다.

〈사례1〉 언론인들이 경험한 대표적인 트라우마 반응¹⁷

‘언론인트라우마위원회’와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의 언론인의 트라우마 관련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재경험이나 악몽 등의 침습 현상, 외상 사건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회피 현상, 과도한 책임감이나 해리¹⁸ 증상, 부정적 사고, 과각성과 수면 장애 등이 언론인들이 겪은 대표적인 트라우마 반응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증상을 경험하던 당시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반응이 트라우마로 인한 것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¹⁵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불리면서 다시는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 상해처럼 치료를 받으면 나아진다는 면에서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상해(Post-Traumatic Stress Injury)’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PTSD가 의학적계에서 워낙 널리 쓰이다 보니 PTSD라는 명칭을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¹⁶ ‘공감피로(Compassion fatigue)’는 타인의 상황에 지나치게 감정입 되고 공감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소진 현상으로, 2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준한다고 보기도 한다.

¹⁷ 안현의 외. 2023. 언론인 트라우마 회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이화여대 심리학과 소속 이화트라우마연구소.

¹⁸ ‘해리 반응’이란 외상 사건 이후 나타나는 방어기제의 하나로, 의식적 자각을 통해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분리시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현상이다.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실제와 꿈을 혼동하는 현실감각 상실,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장에 가면 눈빛을 만나잖아요. 유족의 눈빛, 가해자의 눈빛, 법정에서 선고를 받는 피의자의 눈빛 그런 게 좀 안 잊혀 가지고 시시각각 떠오른다거나 심장이 갑자기 뛰다거나”

“희생자의 입장에서 상상하게 된다거나 배에 간혀서 나오지 못하는 식의 악몽을 꾸다거나 그랬던 게... 기억이 나고요”

“(사건이랑) 감정이랑 분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 현상이 일주일 뒤부터 있더라고요”

“이태원을 못 가겠는 거예요.”

“오히려 일이 없으면 더 생각나니까 미친듯이 일을 몰아붙여서 했어요”

“(이태원) 사건 터지고 일주일 정도 현실과 꿈을 잘 구별 못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슬퍼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겠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어서 잠이 잘 안 와요.”

“힘든 줄 몰랐는데 제가 엄청나게 예민해진다거나 또 과한 분노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하더라고요”

언론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시작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트라우마의 충격과 그로 인한 반응들에 대한 충분한 숙지에서 시작된다.

3) 트라우마 위험요인

그렇다면 대표적인 트라우마의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작성한 의학적 관점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상성 사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아동, 장애인 같은 취약한 대상자 관련 사건인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참혹한 장면에 노출되는 경우 ▲대인 간 폭력이나 성폭력 관련인 경우 ▲가까운 사람이 숨지는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돌발적으로 발생한 통제가 어려운 사건인 경우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표1〉 대표적인 트라우마 사건

- 외상 사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 취약한 대상(아동, 장애인 등) 관련 사건
- 대규모 피해 발생 또는 참혹한 장면에 노출되는 경우
- 대인 간 폭력, 성폭력과 연관된 경우
- 가까운 사람의 사망과 연관된 경우
-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 돌발적인 발생, 통제가 어려운 사건인 경우
-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

©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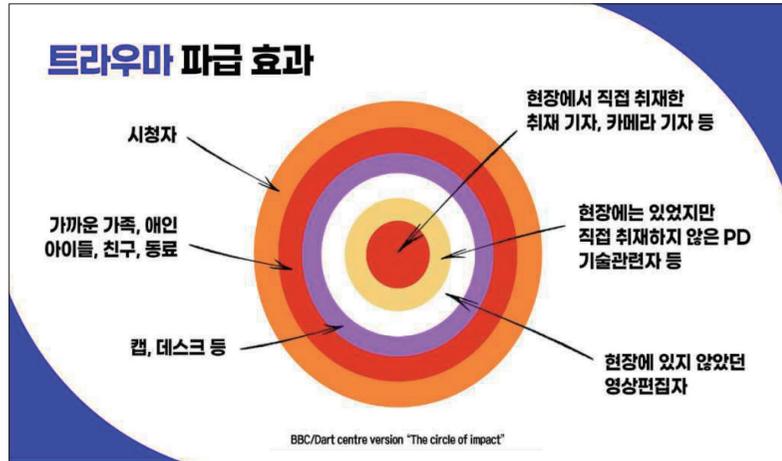
언론인들도 이런 사건들을 취재할 때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고 주의하여야 하며, 취재 후에도 트라우마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지 자신의 상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4) 취재·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영향권은?

다트센터와 BBC가 분석한 ‘트라우마 파급효과’ (이미지2)를 보면 ▲현장에서 직접 사안을 취재한 언론인뿐 아니라 ▲현장에 있었지만 직접 취재하지 않은 스태프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관련 영상에 노출된 영상편집자 ▲상황을 보고 받은 캡(사건팀장)이나 데스크 ▲언

론인의 가족이나 연인, 동료, 그리고 가장 넓게는 ▲시청자나 독자 등 뉴스 소비자까지 취재·보도로 인한 트라우마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지적한다.¹⁹

〈이미지2〉 트라우마 파급효과²⁰



10·29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여러 언론사에서 속보를 취재하고 지속적인 보도를 하면서 심리적 외상을 호소한 사람들이 있었다. 언론사에서는 이제 직접 취재를 나간 현장 기자뿐 아니라 그 사안을 다루는 모든 관계자들, 그리고 뉴스나 속보를 접하는 시청자와 독자의 트라우마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특히 언론보도를 포털이나 SNS 등으로 24시간, 거의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동시에 접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참사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건사고 보도에서도 독자나 시청자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사진, 영상의 반복 보도는 독자나 시청자들에게도 직접 해당 상황을 겪은 것과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

¹⁹ 이정애, 2023, '트라우마 감수성'을 중심으로 언론문화는 세대교체 중, 방송기자 1, 2월호 (통권 70호)

²⁰ 〈이미지2〉는 BBC와 닥터센터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린 것으로, 언론이 트라우마 사건을 취재·보도했을 때 뉴스룸에서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5) 언론인 트라우마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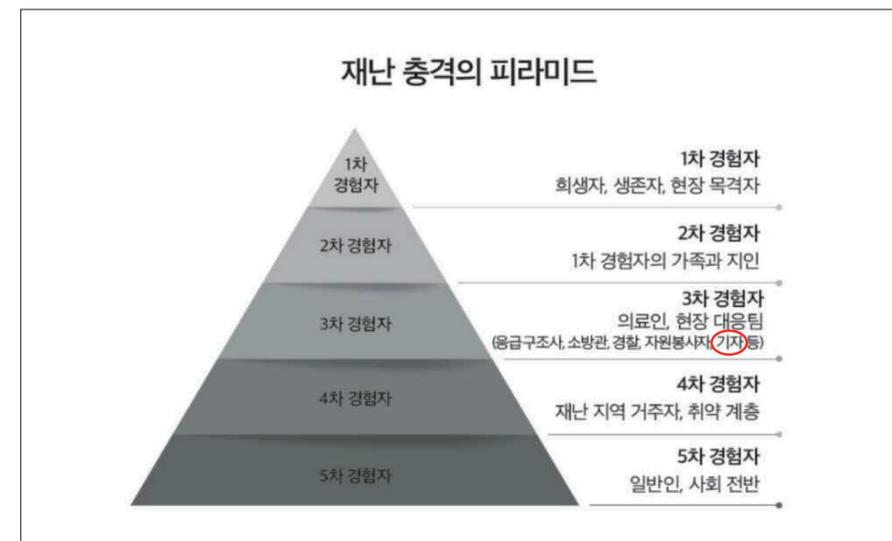
- 언론인은 일의 특성상 장기간, 반복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에 노출된다는 면에서 트라우마 관점의 고위험군 직종이다.

재난상황에서 뿐 아니라 일상 사건사고의 취재에서도 장기간, 반복될 경우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충격의 피라미드’에 언론인을 경찰, 소방, 의료인과 같은 ‘3차 트라우마 경험자’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1차 트라우마 피해자는 희생자, 생존자, 현장 목격자이고 ▲2차 트라우마 피해자는 1차 경험자의 가족과 지인 ▲3차 트라우마 경험자는 의료진과 현장 대응팀 (응급구조사, 소방관, 경찰, 자원봉사자, ‘기자’) ▲4차 트라우마 경험자는 재난지역 거주자 혹은 취약 계층이며 ▲5차 트라우마 경험자는 일반인, 그리고 사회전반을 가리킨다.

〈이미지3〉 재난 충격의 피라미드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발생 후 현장에서 대응한다는 면에서는 3차 트라우마 경험자가 맞지만 언론인들은 때에 따라 ‘현장 목격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인이나 가족의 상황을 취재하게 되거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건사고를 취재하게 되기도 하면서 3차뿐 아니라 1차, 2차, 4차 트라우마 경험자가 된다.

- 언론인들은 한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을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이 끝나기 전에 다음 사건에 노출되는 ‘진행형(ongoing)’으로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특성이 있다.
- 언론인의 트라우마 유발 요인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언론인 트라우마’라고 하면 위험한 현장을 취재하면서 ‘두려움’, ‘공포’ 등의 감정을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만 주로 고려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덕적 상해’, ‘언론인의 온라인 공격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언론인의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 ‘언론인의 트라우마’는 기본적으로 직무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이 아닌 언론사 ‘조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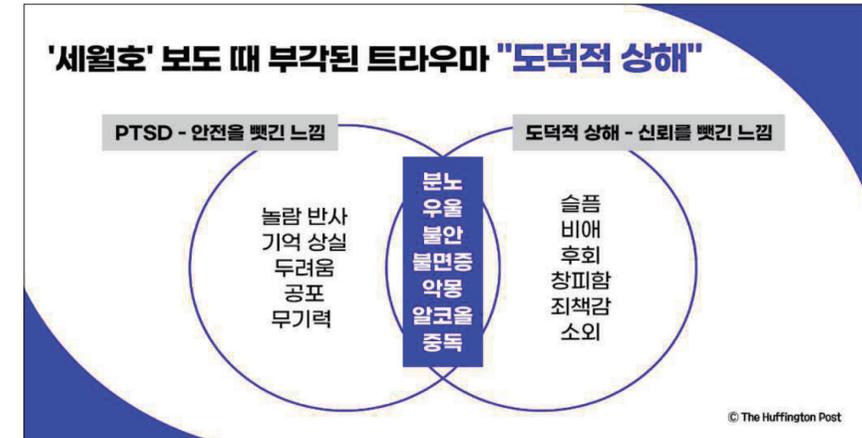
6) ‘세월호’ 보도 때 부각되기 시작한 트라우마 – ‘도덕적 상해’

국내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부각되기 시작한 언론인 트라우마는 ‘도덕적 상해’이다. ‘도덕적 상해’는 내가 믿고 있던 가치나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으로, ‘죄책감’, ‘후회’를 느끼며 ‘신뢰를 뺏긴 느낌’을 갖게 되는 트라우마이다.

‘도덕적 상해’는 전쟁을 나간 군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민간인을 사살하게 된 경우나 부상당한 동료들 두고 올 수밖에 없었을 때 경험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상사나 데스크가 내린 지시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거부하지 못해 이행하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이 초래됐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도덕적 상해’이다.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 팽목항에서 취재하던 현장기자들이 언론인 트라우마 가운데 ‘도덕적 상해’를 호소한 경우가 많았다.

〈이미지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도덕적 상해’의 비교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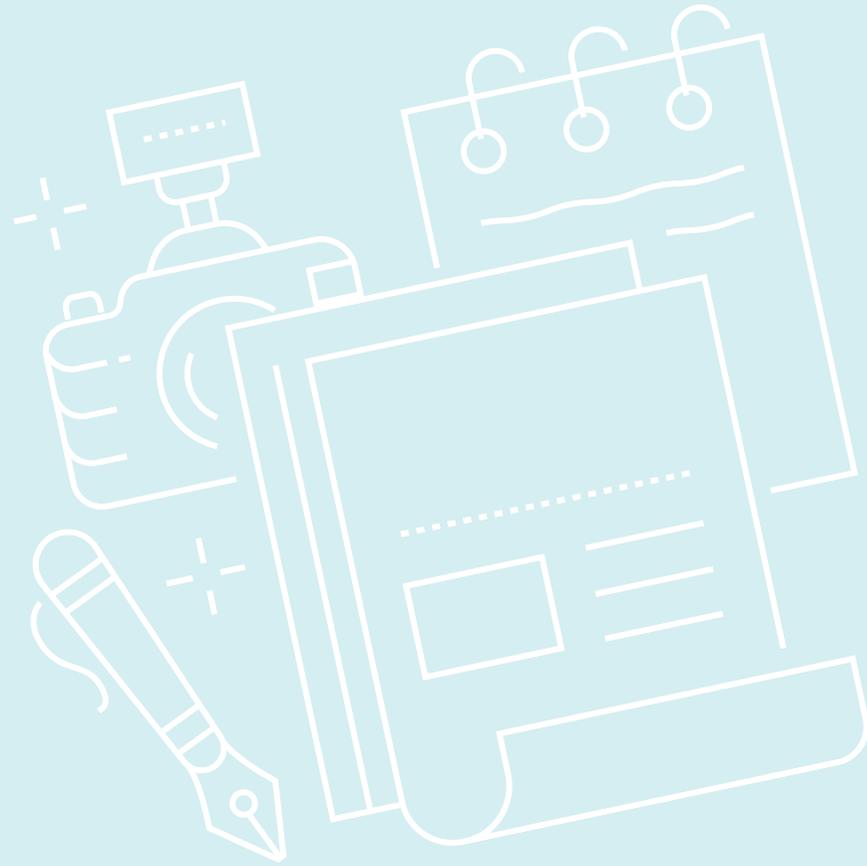


7) 최근 가장 심각한 트라우마 유발 요인 – ‘언론인 온라인 공격’

2019년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언론사나 언론인을 향한 공격의 수위가 기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소위 ‘좌표 찍기’를 통해 지지자들을 모아 언론인들을 집단 공격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 또한 법조 기자, 시위 취재하는 사회부, 정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박제해 놓고 조롱, 모욕하는가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동영상 플랫폼에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들이 늘어났다. 여성기자들을 겨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의도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투 보도에서부터 N번방 보도까지 젠더 이슈나 페미니즘 관련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 대한 공격도 상당하다.

이러한 온라인 공격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언론인의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²¹ 〈이미지4〉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도덕적 상해’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분노, 우울, 불안, 불면, 악몽, 일코울중독 등은 PTSD와 ‘도덕적 상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고, PTSD의 경우는 두려움, 공포, 무기력, 놀람, 기억상실 등이 특징적이며 ‘도덕적 상해’는 슬픔, 비애, 후회, 죄책감, 창피함, 소외 등의 반응이 더 두드러진다.



02

‘트라우마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춘 취재·보도 및 언론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 1) 취재진의 사안 인식 단계
- 2) 인터뷰 단계
- 3) 취재 및 촬영 단계
- 4) 기사 작성 및 편집 단계
- 5) 보도 단계
- 6) 보도 이후의 단계

2. ‘트라우마 리터러시(literacy)²²’를 갖춘 취재·보도 및 언론문화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취재진의 사안 인식 단계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 A.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취재진도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 B. 이 단계에서 만나는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들은 일반 취재원과 달리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면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고 위축된 상태이거나 어렵게 외부와의 접촉을 다시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일 수 있으며 이들이 취재에 응한 것 자체가 용기를 낸 행동임을 인지한다.
 - C. 내가 해당 사안을 취재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점검한다.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는 사건사고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이 된 경우, 가까운 (언론인)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폭력(성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거나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사건을 취재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등 트라우마를 악화시킬 요인을 갖고 있다면 해당 취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럴 경우 데스크나 가까운 선배, 동료에게 상황을 알려 잠시 관련 취재에서 빠지거나 다른 분야 취재를 할 방법을 모색한다.
- 10·29 이태원 참사 취재 후 심리적 외상을 호소한 기자들 중 일부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현장 취재에서 빠진 사례가 있다. 과거 세월호 참사 때도 현장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한 기자들을 다른 취재 인력과 교대해 준 사례 등이 있다.

²² 리터러시(literacy)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에서 나아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트라우마 리터러시’는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뜻한다.

- D.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취재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업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판단해 대처한다.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기자라는 직업적 한계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 E. 언론인은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 상황이 위험해 몸이 긴장될 때 안정을 가져다주는 여러 종류의 ‘안정화’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형 참사나 자연재해 등 위험한 현장에서는 <이미지5>에서 제시하는 3, 5, 8 호흡법²³ (3초간 들이쉬고 5초간 참았다가 8초간 내쉬는 것)이나 팔, 다리의 앞뒤를 손으로 두드리는 것, 발을 굴러 수축된 혈관을 자극하는 것 등이 현실감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순차적으로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힘을 빼서 이완시키는 근육이완법이나 목 뒤를 마사지해주는 것도 긴장을 완화시켜 준다.

<이미지5> 대표적인 안정화 기법 3-5-8 호흡법²⁴



©다트센터

²³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식으로 트라우마 경험 위험이 있는 사건사고 현장뿐 아니라 속보나 생중계를 해야 되는 긴장 상황에도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²⁴ 3, 5, 8 호흡법은 천천히 3초간 숨을 들이쉬고 5초간 참았다가 8초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이다.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취재한 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토닥토닥 두드려 주는 ‘나비 포옹법²⁵’을 시도하면 좋다. 이러한 기법은 사전 교육을 통해 숙지해 두어야 위험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 A.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는 사건사고 취재 시, 사전에 그 사건을 다뤄야 하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럴 때 현장 기자가 상대적으로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트라우마를 경험하더라도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B. 현재 업무를 배정하려는 기자가 해당 사안을 취재하기에 적합한 상황인지 확인한다. 취재기자가 먼저 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취재를 했었는지, 연속으로 외상성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본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자가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운다.
- C.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딜레마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재진이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우 구조를 도울지 취재를 할지, 혹은 일부 유족들은 희생자의 사진 노출을 원하고 일부는 원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등 현장 기자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 많다. 이럴 때 현장 기자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데스크의 역할이다. 현장기자와 긴밀히 상의할 수 환경을 조성하고 데스크 본인도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 등 상급자와 상의해 원칙과 세부 방침을 정해야 한다.

〈박스〉 유가족 동의 여부와 초상권 이슈

이태원 참사 당시 유족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전, 일부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이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사건이 있었다.

트라우마 이해 관점에서 희생자 본인이나 유가족의 동의 없이 언론이 일방적으로 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사건사고로 통제력을 잃고 무기력해진 사람들에게서 자기 결정권을 뺏는 것이 아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가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라우마 이해 관점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노출되고 싶은 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에 향후 피해 회복 등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성폭력의 피해자가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언론은 이를 존중해서 보도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언론을 통해 또 다른 사회적 지지를 느낄 수 있다.

이번 10·29 이태원 참사 보도 과정에서 또 다른 딜레마도 발생했다. 일부 유족이 희생자들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되기를 희망했음에도 모자이크를 하기로 결정한 언론들이 있었다. 유족들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유족 외에 희생자들의 친구나 지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칠 트라우마까지 고려했을 때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일부 언론은 유족들의 기자회견 보도 때에도 유족이나 영정 사진 등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

이렇듯 언론사마다 각 사건이 갖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언론사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취재 시 이러한 사안에도 트라우마의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발생 당시에만 일회성으로 고민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언론계는 물론 전문가들과 함께 사후 논의와 점검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²⁵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안정화 기법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구글뉴스이니셔티브가 2022년 작성한 <코로나19- 언론인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 1.0>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다. P44 참조.

D. 데스크로서 기본적인 가이드는 제시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자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현장의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기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취재원의 인권이나 트라우마 문제를 우려한다면 현장 기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준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하게 될 경우 취재원에게 제2의 피해를 입히거나 현장기자가 ‘도덕적 상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E. 현장기자가 트라우마를 겪었을 수 있는 사건사고 피해 당사자를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방식에 대해 사전 교육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2022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닥트센터의 언론인 트라우마 실태 조사 당시 81.8%가 회사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가능하면 사전에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보도 준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현장기자는 물론 부서 장과도 공유한다.

F.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명과 이미지 공개 여부를 사전에 현장기자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할 것인지, 가명을 쓰거나 성만 공개할 것인지, 이미지를 공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고 사용할지 등을 미리 논의해 보는 것이다. 촬영은 하되 후에 모자이크를 할 것인지 처음부터 뒷모습만 촬영하거나 또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게 그림자나 상징적인 오브제만 찍을 것인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을 교환하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

달해 남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할 때’, 또 ‘(그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을 때’라고 한다²⁶.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취재원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거나 관행적인 10초 내외의 짧은 인터뷰로만 다뤄지면 취재원은 자신이 용기를 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고 느끼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언론인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사안을 정확히 취재해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취재원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취재진도 자괴감을 느끼며 일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면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까지 피해자의 인터뷰가 꼭 필요한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한다.

피해자 외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증언해 줄 응급구조요원이나 경찰관, 목격자 등 제삼자를 찾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실제 최근에는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을 인터뷰하는 대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인터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b. 이 환경은 안전한가?

: 가급적 사건사고 현장으로 취재원을 다시 데려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진이나 영상의 측면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취재원을 다시 현장으로 데려가면 재경험 같은 외상 반응이 유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붕괴 사고 현장인 경우 붕괴 이후 2차, 3차 붕괴가 있을 수도 있어 사건사고 현장 가까운 곳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

2) 인터뷰 단계

① 현장기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 게 최선인가?

: 트라우마를 겪었을 수도 있는 사건사고 취재원을 인터뷰할 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점검한다.

a. 인터뷰를 제대로 진행할 시간이 충분한가?

: 취재원이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팩트)을 전

²⁶ 1997년 ‘트라우마(Trauma and Recovery)’라는 책을 써서 트라우마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을 받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 주디스 허먼(Judith Lewis Herman) 박사가 최근(2023) ‘Trauma and Repair’이라는 신간을 발표했다. 신간 출간 기념으로 닥트센터 브루스 샤피로(Bruce Shapiro) 대표와 가진 웨비나에서 피해자나 생존자들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주디스 허먼 박사는 피해자나 생존자들이 혹 청피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언론과 인터뷰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해 알리고 싶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힘들게 언론과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비슷한 일을 더 이상 겪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https://m.youtube.com/watch?v=nUcSV-9mEmM&noapp=1>

c. 이 사람이 대화를 하기에 적합한 상태인가?

: 사건사고 현장에서 충격을 입은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수 있다. 실제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기억은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파편화되고 무질서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억에 공백이나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일어난 순서에 따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있는 피해자는 인터뷰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을 찾거나 시간을 두고 다시 인터뷰 약속을 잡는다.

〈사례2〉 트라우마 관점에서 가장 힘든 ‘유족’ 취재²⁷

*전 세계 언론인들이 트라우마 관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취재는 ‘유족’ 관련 취재이다.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와 이화여대 안현의 교수 연구팀의 언론인 트라우마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도 참여자들은 모두 유가족 취재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일단 어렵고 피하고 싶죠. 공공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 개인의 상처를 (어쩌면 더) 헤집어 낼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연 정의라고 볼 수 있을지...”

“옛그저께 멀쩡하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망한다든가 그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애도할 자격이 있는가? 친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나는 슬프고, 마음을 어떻게 가늠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한 괴로운 마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기사는 계속 써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유족분들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7 안현의 외, 2023, 언론인 트라우마 회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이화여대 심리학과 소속 이화트라우마연구실

실제 기자들 사이에선 유족이나 생존자를 취재하는 것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일 중 하나로 꼽힌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수습기자가 유족 취재를 경험한 직후 퇴사하는 사례가 있었을 정도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족과 생존자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현장에서 도의적 고민을 하는 기자들이 적지 않다.

영국 힐즈버러 사건의 생존자이면서 재난관리 전문가인 앤 에어(Anne Eyre) 박사는 유족이나 생존자 중에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제대로만 인터뷰한다면 실제 그들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유가족이나 생존자를 인터뷰하는 행위 자체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다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찾아내서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전했다.²⁸

전문가들은 반드시 유족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참사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취재의 제1원칙은 ‘관찰’로, 현장기자가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고 목격한 장면을 묘사하는 문장이나 싱크 없는 리포트로도 현장 상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또한 이것이 취재원은 물론 기자의 트라우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는 특별한 사례나 자극적인 코멘트를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보도를 할 수 있을 지 뉴스룸 차원에서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을 도모해야 한다.

B.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건사고 취재원 입장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것이 항상 나쁘거나 재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지이다. 먼저 소속이나 보도의 목적과 취재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취재 승낙 후 모자이크나 이름 사

28 SBS 미래팀, 2023, “영국 힐즈버러 참사 생존자가 보내온 편지” (앤 에어 박사 인터뷰),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R_zmwLjUhxARgMkhYHm3GosOX0RYHw=

29 2023년 5월 19일 ‘기자의 날’ 열린 제2부 기념 토론회 (언론인 트라우마 실태 및 ‘가이드북 1.0’ 발표회)의 토론자로 나선 박재영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 교수는 근본적으로 취재, 보도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언론인들이 무조건 인터뷰부터 하려 하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취재의 제1원칙인 ‘관찰’에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본인의 저서 <뉴스 스토리>(2020, 서울: 이체)에서도 “한국기자들은 취재의 많은 시간을 인터뷰 코멘트를 구하는 데 사용한다. 자기가 들은 내용을 인용문이라는 형식으로 독자에게 설명하려 한다. 사실성의 순도가 낮고 전달력도 떨어지는 방식이다. 인터뷰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독자에게 말을 설명하지 말고 독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국기자들은 인터뷰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최고의 취재수단은 관찰이다. 한국언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전하고 있다.

용 여부, 소셜미디어 등 게재 범위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를 구한다.

주변 환경을 고려해 취재원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질문도 가급적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유가족 또는 생존자 협의체, 혹은 대책본부 등이 있다면 대표를 통해 인터뷰를 희망하는 유족을 찾는 것도 현명한 접근법이다. 재난보도준칙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취재협의체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시경기자단 차원의 논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C.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건사고 취재원이 인터뷰에 응하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겪은 끔찍한 일을 회상하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심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인터뷰를 마친 후 몸살이 걸리는 등 신체적 반응을 경험했다는 취재원의 사례도 있다.

D. 유가족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기에 취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완강하게 거절하는 이들은 그 시점에 인터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취재원일 수 있다.

E. 가능하면 인터뷰 관련 작은 사안이라도 취재원이 직접 정하게 하라.

: 트라우마를 겪은 사건사고 취재원들은 무기력해지고 통제권을 박탈당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은 사안이라도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피해 경험 취재원이 인터뷰 장소나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다. 낯선 장소에서 처음 보는 언론인과 대화하는 것이 두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같이 오도록 해도 좋다. 이럴 경우 취재원이 더 편안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언론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F.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건사고 취재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반적인 정치인·기업인·전문가 등의 인터뷰보다 상호 간의 신뢰가 훨씬 중요하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기력함을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자신을 상대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방식에 훨씬 더 민감하다.

피해 경험 취재원은 외상적 사고도 자신의 탓으로 여기거나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시 취재원을 탓하는 뉘앙스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기사화를 약속했는데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다. 사전에 언론의 특성상 모든 인터뷰가 기사화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최대한 증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대로 보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G. 인터뷰 중 취재원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직면하는 것이 꼭 취재원이 말하기 좋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해리 증상이 나타나거나 문을 찾거나 사건 당시 경험한 것과 비슷한 신체적 반응을 보이면 그 공간을 안전하지 않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를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라도 성급하게 카메라를 끄거나 노트북을 덮으면 본인이 무엇인가를 잘못된 것으로 인지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H. 사건사고의 피해자나 유족에게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대신 일어난 행위나 사건에 대해 묻는다³⁰. 유족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은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묻는 질문이라고 한다. 유족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가 얼마나 잔인한 요청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또한 생존자들에게 사건사고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물을 경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감정을 되살려 자극할 수 있다.

그래서 감각이나 감정에 대한 질문보다는 능동적으로 행한 행동 관련 질문들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같은 질문을 하면, 취재원은 자신이 인터뷰 내용을 통제할 수 있다 느껴 더 안전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³¹.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발간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에서도 감정 관련 성급한 추정이나 편견 섞인 위로 등을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³².

³⁰ 취재진이 사건사고의 피해자인 취재원들을 만나는 단계는 의학적으로는 감각기억과 단기기억이 형성되는 페리트라우마 단계 (Peri-trauma stage)라고 한다. 이 단계는 그렇지 않아도 감각이 더 과각성 되게 느껴지는 단계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지되면 평생 그 사건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사고 현장에서 취재진은 취재원에게 가급적 감정 관련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³¹ Kimina Lyall, 2022, “Interviewing in the aftermath of trauma”, <https://darcenter.org/resources/interviewing-aftermath-trauma>

³² 주의해야 할 표현으로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이겨내지 못할 아픔일 것 같아요”, “더 힘든 분도 있어요”,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은 살았잖아요” 같은 성급한 추정이나 편견 섞인 위로, 혹은 “곧 좋아지실 거예요”, “언젠가는 이 일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으실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극복하셔야 해요”, “가족들을 생각해이라도 힘내세요” 같은 재난에 대한 개인적 차이를 간과한 표현은 주의해야 할 표현이라고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은 전하고 있다.

I. 고통에 따른 취재원의 반응이 취재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반응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당했어도 굉장히 맛있하고 고른 어조로 전하는 경우도 있고, 맥락에 어울리지 않게 웃음으로써 긴장 상태를 모면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트라우마 반응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적절한’ 트라우마 반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J. 피해 경험 취재원이 인터뷰 도중 눈물을 울리거나 울 수 있다. 의료진들은 가급적 중간에 끊지 말고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감정 표현이 무뎌지곤 하는데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외상성 사건과 관련한 감정이 표출되면 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처 치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 의료진은 아니지만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의 치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런 상황을 회피할 필요는 없다.

〈박스2〉 1/3 인터뷰 법칙³³

일부 임상자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재원들에 대해서는 ‘1/3 법칙’ (rule of three third)을 인터뷰 방식으로 제안한다.

대화의 첫 1/3은 인터뷰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내용에 집중하고, 중간 2/3 지점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예를 들면 트라우마 사건 자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후반 1/3 부분은 현재와 미래에 관해 묻는 것이다. 생존자가 현재로 돌아올 수 있게 또 미래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인터뷰가 끝났을 때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 완전히 몰입한 채로 누군가를 떠나보내지 않기 위한 배려이다.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되 억지로 상황이 더 나은 척하지는 않는다. 이런 방식을 취할 경우 피해 경험 취재원이 자신의 이야기를 훨씬 더 편하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재진에게도 도움이 된다.

끝나고 취재원에게 인터뷰가 어땠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귀가 시 교통편이나 현재 몸의 컨디션 등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말을 건네고 감사를 표현하면 언론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K.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지 물어봄으로써 미처 하지 못한 말이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트라우마나 역경을 대처한 뒤 발생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외상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부른다. 힘든 상황이지만 의미를 부여(Meaning Making)할 수 있게 되거나 이점 (benefit finding)을 발견했을 때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과 인터뷰를 한 뒤 감사함을 표시하고 이들이 공유해 준 경험이 사회변화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도울 경우 취재원의 ‘외상후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언론이 특정 사건을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보도하는지에 따라서는 사건의 관계자뿐 아니라 시청자나 독자들까지 특정 사건을 둘러싸고 ‘외상후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최근에는 언론도 단순 사안 보도를 넘어 공동체 차원의 치유와 공감대 형성에 역할을 해야 한다³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인터뷰 섭외나 진행 중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취재원에게 취재진이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취재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심리적 외상을 입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공격을 받은 상황이 확인되면 언론사 차원에서 같이 대처함으로써 언론인의 안전을 담보한다.

³³ 2021 닥트센터 유럽에서 작성한 <갈등 상황에서의 성폭력 사건> 관련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트라우마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인터뷰 방식. Dart Centre Europe, 2021,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coveringcrsv.org)

³⁴ Veil, S. R., (Clearing the Air: Journalists and Emergency Managers Discuss Disaster Response),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vol.40, pp.289-306, 2012,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0909882.2012.679672

〈사례3〉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재원의 예상치 못한 반응³⁵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취재원에 의해 먹살이 잡힌다든지, 장비가 부서진다든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건사고 취재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트라우마 반응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와 이화여대 안현의 교수 연구팀이 언론인 트라우마 관련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만난 언론인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조직이 적절히 대처해주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삼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무기력감까지 경험했다.

취재진이 제대로 된 사안 보도를 위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취재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경우였다 해도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재원이 취재진을 향해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공격을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취재진이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취재진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상황이 아니어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며, 언론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트라우마의 반응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반응이 취재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기 때문에, 데스크와 상의해 언론사 차원에서 대처함으로써 언론인을 보호해야 한다.

B. 현장의 상황이 위험하거나 취재원들이 충격으로 인터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취재를 하기보다 이를 하지 않은 이유까지를 보도하는 것이 더 큰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3) 취재 및 촬영 단계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트라우마를 겪은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이 취재·촬영을 허용하는 개인 생활 장소가 어딘지 사전에 논의한다. 시간 등에 대해서도 취재원과 충분히 상의를 거친다. 일터 등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곳을 취재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며 피해 경험 취재원이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피해경험 취재원의 측에서 노력한다.

B.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이나 취재원의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취재·촬영하지 않는다. 특히 미성년 형사 사건 피해자와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인권 침해의 우려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사의 윤리 준칙을 따를 것을 조언한다. (KBS는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다룰 때 그 사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단순한 호기심 충족 차원으로 다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SBS는 보도윤리 강령에서 ‘미성년 형사사건 피해자와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와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MBC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준칙’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사건에 관련된 경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인터뷰가 필요한지 숙고해야 한다’고 전한다.)

〈박스3〉 ‘정치적 양극화’와 안전을 위협받는 언론인

2019년 이후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언론인을 향한 공격이 거세졌다. 과거에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만 언론인들이 공격을 받았다면 이제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언론사 및 언론인을 향한 공격의 수위가 언론인들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³⁵ 안현의 외, 2023, 언론인 트라우마 회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이화여대 심리학과 소속 이화트라우마연구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대놓고 특정 언론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재에서 배제하거나 모욕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시위현장에서 특정 언론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 지지자들이 둘러싸고 야유를 한다거나 중계차 위에서 촬영하는 카메라 기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중계차를 흔드는 등 카메라 기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기자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트라우마와 관련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 역시 취재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위현장에서 만약 공격으로 인해 대피를 해야 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철수할 것인지를 미리 약속을 해야 한다. 시위현장에 최소한 3명이 한 팀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장하며 카메라 기자나 취재기자가 현장을 취재하는 동안 오디오맨은 공격해 오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일까지 맡을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언론사의 로고가 공격의 빌미가 된다면 로고를 레인커버(Rain Cover)로 가리거나 로고가 없는 잠바를 입는 것 등도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이다.

〈박스4〉 상대적으로 트라우마에 더 취약한 영상취재기자³⁶

현실적으로 커다란 장비를 들고 취재할 수밖에 없는 영상 취재기자는 군중의 타깃이 되기 쉽다. 또 영상 기자의 경우 동영상이라는 매체적 특징상 항상 ‘편집’을 고려해 상황을 기록하는데, 이를 위해선 상황·현상을 분할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프레이밍(framing—구조화)된 기억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영상기자는 또한 피해자의 상처를 클로즈업으로 기록하기 위해 ENG카메라의 줌 기능을 활용해 전체화면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선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만 뷰파인더를 통해 상처 부위를 정확하게 응시해야만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어, 이 순간 영상기자의 시각정보는 ‘상처’가 전체 기억을 차지하게 된다.

피해자나 유가족을 인터뷰하는 순간에도 영상기자의 경우 인터뷰가 간섭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어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하는 순간 영상기자의 청각정보는 현장음은 배제되거나 줄어들고 피해자의 육성만 기억에 또렷하게 남게 될 수 있다. 또한 취재 이후 편집이나 송출 업무를 하면서 기록된 영상과 음성을 수차례 재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영상 기자의 기억과 감정은 상대적으로 트라우마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교육이나 지원 등에 영상취재기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³⁷. 언론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교육이나 지원 내용이 달라져야 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B. 트라우마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를 여러 명이 팀을 이뤄 취재할 경우 서로 취재 내용에 대한 공유 뿐 아니라 서로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을 권장한다.

³⁶ 세월호를 취재한 기자들의 PTSD 정도를 조사한 숙명여대 배정근, 이미나, 하은혜 교수 연구팀의 ‘언론인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를 보면 영상취재기자가 취재기자나 사진기자보다는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감정을 더 강렬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닥터센터, 구글뉴스이니셔티브의 한국기자 트라우마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도 영상취재기자가 트라우마를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³⁷ 위의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영상취재기자〉 섹션을 참고. 영상취재기자는 취재기자처럼 기사를 쓰는 작업을 통해 상황을 객관화할 기회가 없는 것도 트라우마가 더 심한 이유의 하나로 언급된다.

호주 ABC나 영국 BBC 등 트라우마에 대한 고민을 앞서 해온 해외 언론사에서는 ‘피어 서포터 (peer supporter 동료 지지)³⁸’ 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다. 트라우마에 대해 사전에 조금 더 교육을 받은 보도본부 내 동료들이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를 취재하는 동료에게 연락해 괜찮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봐 주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인력 교대나 상담, 의학적 도움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해외언론사의 피어 서포터는 취재기자뿐 아니라 영상·사진기자, 편집기자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다. 직접 데스크에게는 어려움을 토로하기 어려울 때 피어 서포터가 해당 데스크에서 상황을 전달하고 상황을 조율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시스템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힘든 취재 중에는 현장기자가 괜찮은지 데스크나 선배가 살펴주고, 필요할 경우 개인적으로나 조직의 관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기해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C. 데스크의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를 겪는 언론인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 교대 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해 인원 배정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파견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 D. 트라우마 관련 취재·보도 과정이 윤리적이었으면, 트라우마를 혹 경험했어도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트센터에서 언론인 전담 심리사의 배출을 위한 ‘저널리즘 트라우마 지지 네트워크(Journalism Trauma Support Network)’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있는 다트센터 연구 이사 엘라나 뉴먼(Elana Newman) 미국 톨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언론인들을 상담한 결과 트라우마를 겪었어도 과정이 윤리적이었다면 회복도 빨랐다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는 현장 취재기자가 가능하면 최대한 윤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4) 기사 작성 및 편집 단계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 A. 구성과 편집 단계에서는 문제제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한다.
- B. 팩트 체크가 전제된 경우 가능하면 트라우마 경험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이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취재원이 겪은 사안이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C. 모자이크와 음성변조, 익명처리 등 피해경험 취재원과 사전에 약속한 사안은 철저히 지킴으로써 신변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D. 특히 탐사보도처럼 긴 시간 취재원을 촬영하고 인터뷰한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취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면 구성이나 편집방향 등을 보도 전 미리 이야기해 준다.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은 취재원은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한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언론인들의 인터뷰에 응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터뷰 부분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어떤 내용이 사용되는지 물어올 경우 가능하면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불안감을 해소시켜 준다면 언론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만약 이견이 있을 경우에도 보도 전에 설명해 이해를 구할 때 양해가 될 가능성도 더 높다³⁹.

취재 의도에 맞게 취재원을 섭외해 인터뷰까지 마쳤지만, 결국 취재원의 트라우마를 우려해 기사화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당시 기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관련 기획을 하며 현장에서 사망한 동료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노동자를 인터뷰했다. 비상구 표지판을 볼 때마다 당시 상황이 연상돼 괴롭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기자가 취재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고, 전체적인 기획 내용에도 부합했지만 이 기자는 고

³⁸ 방송기자연합회, 2019,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저널리즘 아카데미 전문취재기자 과정 연수기

³⁹ 실제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재원과 취재진 같은 강한 유대감이 만들어질 경우 이후에도 제보를 해오는 등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스러워하던 취재원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데스크와 논의했다. 취재원에게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도 되는지 재확인하기로 했고 결국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취재원의 발언으로 현장 노동자의 어려움을 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를 보도 기록으로 남겼을 때 취재원의 회복에 방해가 되거나 2차 피해를 남길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는 기자의 ‘도덕적 상해’를 예방한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에 참여토록 하는 언론인의 임무와 취재원의 2차 피해 예방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할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기획성이나 탐사 보도와 달리 일상적인 속보나 사건사고 보도 시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여유가 많지 않아 더 어렵다. 현장 취재기와 데스크가 평소 이런 문제를 긴밀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 E. 취재의 방향이 처음 취재원에게 설명했을 때와 달라진 경우 취재원에게 상황을 보도 전 미리 설명해 준다.
- F. 만약 미리 촬영한 취재원이 마음을 바꿔 인터뷰를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오면 취재진의 입장에서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으나 적합한 인터뷰이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 A. 해외 언론들의 경우에는 최근 대형 참사인 경우 가능하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지, 희생자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몇 주기 등 지난 참사를 다시 기사화해야 될 때, 재난현장을 보여주거나 과거 자료 화면을 사용하기보다는 추모 현장만 보여주기로 결정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⁴⁰. 우리도 각 언론사의 차원에서 혹은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 같은 언론유관기관

의 차원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따를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 B. 현장기자는 취재원을 직접 대하는 사람이다 보니 가능하면 취재원의 입장에서 보도하기를 원할 수 있고, 취재원의 주장이 사실이고 내용이 타당하다면 그들의 주장이 잘 반영되게 편집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피해경험 취재원의 주장이 항상 옳거나 선한 것은 아니며, 트라우마의 영향을 받으면 방어 수단의 하나로 그게 옳든 아니든 특정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취재원의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팩트 체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 되어야 한다.
- C.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피해 경험 취재원에게 보도 전에 어떤 부분이 인용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사전 검열이 아니다. 모든 기사에서 사전에 취재원에게 내용을 공유해 줄 수는 없지만 트라우마를 겪으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기 때문에 유난히 불안해하는 경우 사전에 알려주고 혹시 의견이 다를 경우 왜 그 부분을 사용했는지를 사전에 설명한다면 존중받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괜한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 D. 원거리나 간접적인 취재로도 슬픔을 전할 수 있음을 인지하라. 직접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안을 보도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언론은 힘든 이야기를 독자가 외면하지 않고 보게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데스크가 다른 방식에 대해 깨어 있을 때 현장 기자도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실험해 볼 가능성이 높다.

⁴⁰ SBS 미래팀, 2023, “영국 힐즈버러 참사 생존자가 보내온 편지”,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R_zmwLIXuhxARgMkhYHm3GosOX0RYHw=

〈이미지6〉 직접적인 현장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안을 보도한 사례⁴¹



Е. 감정 과잉을 유발하지 말라. 보도의 목적은 그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해결책의 모색이지 분노 유발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청자들도 심리적 외상을 입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느 정도가 과한 지에 대해 고민하라.

〈박스5〉 10·29 이태원 참사 – 무엇을 보도하지 않을 지에 대한 논의 시작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를 필두로 참사에서 무엇을 다루지 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의 경우 자극적인 영상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꼭 사용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현장음도 제거했다. CPR 등 사고 직후의 구조 화면도 사용을 자제하고 부득이 써야 할 경우 강하게 모자이크 처리하고 정지 화면을 쓰기도 했다.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면서 방송들이 참사가 일어난 특정 골목이 아닌 구조요원의 모습을 대형 화면에 주로 걸었던 것도 사건의 실체는 다루되 제2의 피해는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미지7〉 “참사 영상 원칙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언론들의 선언⁴⁴



5) 보도 단계

국내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 부상하기 시작한 트라우마의 개념 가운데 하나가 ‘도덕적 상해⁴⁵’이다. 이는 특정 사건을 둘러싸고 데스크와 현장 기자 간의 이해부족이나 갈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으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내가 믿고 있는 가치와 다른 행동을 취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을 경우 경험하게 되는 증상이다. 취재단계뿐 아니라 보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보도 이후 ‘도덕적 상해’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 포함한다.

① 현장기자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누구도 다치지 않게 신중을 기해 보도하라.

41 〈이미지6〉은 직접적인 현장 영상·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보도한 실험적 사례이다. 첫번째 것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과 3학년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한 날이다. 영상을 촬영했으나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영상 대신 삽화로 보도한 SBS 사례이다. 두 번째 것은 세월호 참사 때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직접적인 모습 대신 뒤돌아 서있는 경찰들의 눈물이나 그렇그렁한 모습 등으로 슬픔을 전달한 CNN 사례이다.

4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360962&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43 https://www.youtube.com/watch?v=8vUYcp8Dsvw&ab_channel=CNN

44 〈이미지7〉은 10·29 이태원 참사에 주요 언론들이 참사 영상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 KBS, MBC, SBS, YTN 등 주요 영상들이 10·29 이태원 참사에서부터는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약속하기 시작함. 〈이미지6〉은 KBS 앵커들이 원칙적으로 참사 영상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모습,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90777>

45 21p 1-6) 참조

- B. 현장 상황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것은 현장기자이다. 만약 데스크가 기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나 제목을 붙이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치려 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다. 무조건 안된다고 우기기보다는 왜 그게 우려되는지 설명하고 “이것 대신 이런 방식은 어때요?” 하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다투는 센터는 조언한다.
- C. 피해 경험 취재원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 취재진의 판단으로 단정해 보도하지 말라.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이 많이 화냈던 부분 가운데 하나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관행적인 표현이었다. 유가족들은 ‘나는 화가 나 있는데 언론은 왜 유족들이 슬프다고 주장하냐’라며 분노한 경우들이 많았다. 더군다나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감정에 대한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상황이므로 가능하면 보도에서도 잘 알지 못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 D.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취재원을 보도할 때는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해 낙인찍히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보도를 위한 것이라 해도 특정 사건의 인물로 부각되어 낙인찍히면 회복이 힘들어지고 다시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워진다. 대구 지하철참사의 보도에서 영웅으로 부각된 취재원이 후에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 사례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취재진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취재원이 낙인찍히지 않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 A. 국내 일부 언론사들은 2017년쯤부터 특정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하는 방식의 새로운 보도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사이니 종현 사망 사건 때 SBS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는 메인 뉴스에서 그 사건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인의 죽음과 관련됐다고 해도 사회 구조적 문제와 부합하는 사건이 아닌 경우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더 이 사회를 위해 나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도 보도 자제 요청이 있었다. 만약 다루게 되면 제목 등에 자살임을 부각하지 말고,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말아 달라

고 했다.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명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B.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실(팩트)에 집중하여 보도하는 것이다. 재난이나 인재로 인한 참사는 사회 구성원에 불안감과 공포를 준다. 언론인이 현장과 관련한 사실 정보를 성실히 보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동체가 참사의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C. 사망자 수에 대해 속보 경쟁 하지 않는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황을 인지했어도 성급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또 정부의 발표도 의심하고 팩트를 체크해야 한다. 이는 세월호 참사 보도 이후 이뤄진 반성의 일환이다. 실제 이태원 참사 때 주요 언론들이 이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다. 제보 등을 통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은 급하게 피해 규모 등을 앞다퉈 보도하지 않고 공식 발표를 기다려 자사 판단과 대조한 뒤 보도했다.
- D. 특정 사건의 경우 사건명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트라우마 이해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0·29 이태원 참사의 경우 지역 이름을 넣어서 부를 것인지, 발생 일시만으로 부를지를 두고 언론사들 간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사유지나 상업지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지역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특정 지역이 특정 사건으로 낙인 되는 것을 우려해 지역명으로 규정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특정 사건명에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말이 붙어 회자되기 시작하거나 (#보스턴스트롱(#bostonstrong), #맨체스터투게더(#manghestertogether) 등) 회복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때는 그 지역명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 어떤 방식이 항상 옳고 어떤 방식은 항상 그르다는 일관된 답은 없다. 또 언론이 그렇게 규정하기 전에 사회에서 특정방식으로 불리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특정 참사가 터졌을 때 언론이 이러한 질문까지 던지면서 생존자, 유족, 커뮤니티 등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E.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를 취재·보도한 언론인들이 실제 트라우마를

겪지는 않는지, 상담이나 의학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휴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를 확인해 조치해 주어야 한다.

〈박스6〉 10·29 이태원 참사- 언론인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 공감 및 언론사·유관기관 차원의 본격적 대처 시작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많은 언론사는 재난 보도 과정에서 현장 기자는 물론 영상·편집자 등 참사 취재·보도에 참여한 모든 직종의 언론인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 지원 등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 한국기자협회는 각 언론사에 〈재난보도준칙〉 준수를 요청했다. 아울러 11월 1일 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 명의로 〈이태원 참사 관련 기자 트라우마 대응 방안 안내〉라는 명의로 공문을 발송해, 기자 개인은 물론 각 언론사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언론인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언론유관기관들은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한국심리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 협조해 시너지를 냈다. 각 학회에서는 이태원 보도를 접하는 뉴스 수용자들은 물론 언론인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도 표하면서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언론인의 트라우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10·29 이태원참사가 처음이었다.

실제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언론인 중 트라우마 반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다수 나왔다. KBS SBS MBC 등 방송사는 물론 국민일보 한겨레 등 신문사를 포함한 여러 언론사에서 소속 언론인에게 심리 상담 지원, 업무에서 배제 후 휴가 조치 등을 취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기자협회 회원인 언론인을 상대로 상담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또 전국언론노조에서도 조합원들을 위한 긴급 무료 심리상담 ‘토닥토닥’ 서비스를 통해 언론인들에게 전화 및 대면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이태원 참사 보도 후 이 같은 대응 움직임은 국내 언론사와 유관 기관들이 기자들의 트라우마에 대해 공감하고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참사 과정에서 언론인에 대한 지원 실태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평가 등을 언론인은 물론 언론학회 등 전문가 그룹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언론인들의 트라우마도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인지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나 모든 언론사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유관기관이 중심이 돼서 트라우마를 겪는 언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시급하다.

현재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의, 닥센터 등의 공동 TF인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에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심리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언론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상담사와 의료진의 배출을 위해 ‘언론인트라우마클리닉’ 등의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6) 보도 이후 단계

① 현장기자가 고려해야 할 점

- A. 보도 이후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 피해 취재원에게 보도는 봤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물어보고 아쉬웠거나 다르게 나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다.
- B. 보도 후에 피해 경험 취재원에게 주변의 인식이나 도움 등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후에 사안과 관련해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피해경험 취재원에게도 그 사항을 알려준다
- C. 보도 후에도 피해 경험 취재원이 도움을 요청해 올 경우 언론인의 신분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
- D.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큰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라도 가급적 피

해 경험 취재원이 용기를 내 제기한 문제가 얼마나 의미가 있고 소중한 시도였는지 전한다. 실제 문제제기만으로도 사안에 대한 주위 환기에 큰 역할이 됐음을 알려준다.

② 데스크 입장에서 고려할 점

A. 트라우마를 경험할 정도로 힘든 날이라면 저녁 회의 때 다음날 아이টে임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날 취재하면서 겪었던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 서로 묻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B. 데스크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현장 취재 기자들의 심리적 외상 상태를 모니터 하고, 교대 시점을 포함해 다음 사건 취재 배정을 할 때 누구를 배정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한다.

C. 트라우마를 경험한 취재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이러한 반응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대개는 3~4주 정도 지나면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설명해 주면 좋다. 실제 3~4주 뒤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시간 동안 그들을 조용히 주시한다. 만약 3~4주 뒤에도 괜찮지 않으면 상담이나 의학적인 도움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D. 보도 관련 온라인상의 공격을 받은 언론인이 있다면 언론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는다.

〈사례4〉 동료 간 심리적 외상 경험 공유와 관계적·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와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의 언론인 트라우마 관련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참여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신뢰하는 선후배 동료와 고충을 나누며 관계적,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험에서 가장 큰 공감과 유대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나마 도움이 됐던 것은 제 문제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선후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트라우마 관련해서 엄청 많이 아시는 선배가 저를 보더니.. 숨을 깊게 쉬라고 하시고 [웃음] 라벤더 티 같은 거 선물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허브티 같은 거 먹으면 잠 잘 수 있다고..”

“선배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그런 거에서 나름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 이태원 참사 이후 국민일보 등 일부 언론사 사건팀에서는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끼리 모여 심리적 외상에 대해 같이 얘기 나누는 자리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렇게 동료들끼리 트라우마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되면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일의 특성상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이러한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됨으로 인해 서로 큰 위로와 지지를 얻으면서 힘든 상황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박스7〉 언론인에 대한 온라인 공격

과거에는 보도가 끝나면 직접 보도를 했던 취재원이 어떻게 느꼈는지 혹은 주변의 이 보도를 둘러싼 반향을 살피는 것만 하면 됐다. 하지만 온라인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뉴스 소비가 확산하면서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이 트라우마 관련 가장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보도의 사실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뉴스 소비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견해와 다른 보도를 하는 언론사나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부 정치 팬덤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장관, 시도지사와 같이 힘 있는 정치인 중 일부가 소위 ‘좌표 찍기’를 통해 특정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유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 정치 세력 지지자들이 언론인에 대한 테러 협박을 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여성기자협회, 다트센터와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가 함께 한 한국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공식 트라우마 관련 설문조사⁴⁷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더 느끼는

47 김달아, 2022, “기자 10명 중 8명 “일 하면서 심리적 트라우마 겪었다”, http://m.journalist.or.kr/m_article.html?no=51308

지 중복선택하게 했을 때 61%는 현장 취재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느낀다고 답했지만 바로 그다음인 58.4%가 보도 이후 독자들의 이메일이나 댓글 등 직접적인 공격에서 트라우마를 느꼈다고 답했다.

‘기사 댓글’로 인한 공격이 가장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조롱하기’(75.2%)와 ‘모욕하기’(74.3%)를 경험했다고 한 기자들이 남녀 차이 없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성적수치심유발’은 남성 기자는 2.1%가 월 2~3회 느끼고, 6.3%가 연 2~3회 경험한 반면 여성은 3.4%가 주 2~3회, 8.7%가 월 2~3회, 22.6%가 연 2~3회 경험한다고 답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기자들이 훨씬 더 높게 온라인에서 성별을 이유로 공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국내 상황에서는 연예, 스포츠 부문 기사에 대한 포털 댓글이 폐쇄되면서 댓글 쓰기가 가능한 사회 일반 부문 기사, 정치 분야에 대한 기사에서 기자를 공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젠더 관련 기사에서 바이러인이나 기자 페이지 등을 통해 짐작한 기자의 성별을 토대로 여성 기자에 대한 공격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포털의 댓글 쓰기를 통한 조롱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외에도 기자 개인의 신상 털기, SNS를 통한 박제 및 허위 사실 유포, 유튜브들의 의도적이고 집요한 괴롭힘 등도 늘고 있다. 언론 비평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기자 개개인에 대한 인신 비방, 조롱하기를 위한 별도 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등도 개설된 실정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물론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다.

해외 연구⁴⁸에 따르면 이러한 온라인 공격은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유발하거나 불안감, 우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언론인의 경우에도 긴장성 두통부터 몸살감기, 불면증과 공황증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은 언론인에게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기자들의 취재 어젠다 선정, 취재 과정, 기사 작성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인 개인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데스크에서부터 언론사, 언론유관기관, 미디어 학계 등이 함께 관심을 갖고 대처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③ 언론인 온라인 공격 대응 방안

A. 개인 차원 대응

- a. **피해 사실 기록으로 남기기** – 언론인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은 공유된 것이 많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우선 관련 피해 내용을 문서화할 것을 권장한다. 언론인 개인이 온라인 공격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부터 위협이 일어난 세부 장소, 시간 등을 스크린샷 등을 통해 확보한다. 또 관련된 사람 수, 위협이 암시적인지 명시적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메모하고 축적해 둔다.
- b. **피해 사실 회사와 공유하기** – 데스크와 회사 조직에 자신이 온라인 괴롭힘의 표적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한다. 언론사 자사 사이트나 SNS 계정 등이 아닌 경우 SNS나 해당 포털에 신고한다. 또 개별적으로 온라인 괴롭힘을 보낸 사람에 대해 공격 사실을 증거로 남긴 뒤 차단한다. 그럼에도 괴로운 메시지가 계속 오면 데스크나 팀원, 동료에게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확인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 c.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체크하기** – 이상적으로는 관련 내용을 보지 말거나 무시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의 온라인 괴롭힘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또 여러 명의 조직적인 가해자가 연관되거나 개인을 넘어 주변 가족에게까지 공격이 확장되기도 한다. 온라인 공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필요한 경우 회사에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한다.
- d. **법적 조치 여부 결정하기** – 온라인 공격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대다수는 법적인 대응까지는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할 경우, 사내 법무팀이 있다면 자문 변호사와 함께, 신고 및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회사 내 법무팀이 없다면, 언론유관기관 등을 통해 언론인의 온라인 공격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리스트를 공유받거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길을 확보한다.

⁴⁸ Autumn Slaughter, Elana Newman, 2020, "Journalists and Online Harassment", <https://dartcenter.org/resources/journalists-and-online-harassment>

B. 언론사 조직 차원 대응

- a. **회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인지** – 언론인 온라인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 취재권 보호의 문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다. 기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출입처 이동에서부터 법적 대응 지원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b.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 – 기자에 대한 공격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포털이나 SNS에서 관련 내용이 확산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자와 함께 SNS, 포털 등에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한다.
- c. **언론인에 대한 심리 지원** – 혐오 댓글이나 온라인 공격도 심리적 고통을 일으켜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이해하고 기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휴가 조치를 비롯해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한다. 평소에 정기적으로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 d. **법적 대응 및 인사 관련 지원 조치** – 기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형사 소송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법무팀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증거 수집,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자가 평소 취재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지해야 한다. 법적 대응에 필요한 시간 확보 및 기타 지원을 위해 부서 이동, 인력 보강 등의 인사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소송은 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e. **언론인에 대한 안전 확보** – 온라인 공격을 받는 언론인의 경우 그 공격이 오프라인으로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언론사가 해당 기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해야 한다. 가령 출입처 등 취재 현장에 가능하면 혼자가 아니라 팀원들과 같이 다니게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 인사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전할 수 있는 내근 부서로의 이동 등도 고려할 수 있다.

f. **동료 및 조직적 차원의 지지 확보** – 온라인 공격은 기자의 오보나 취재 과정에서의 실수 등 문제가 있어서 생기기보다는 무작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목된 언론인의 잘못이 아니며, 조직 내 언론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지해야 한다. 해당 기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동료들과 조직 차원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g. **자사 홈페이지, SNS 등에 언론인 보호 명문화** – 외국에서는 소위 ‘트롤버스터스(trollbusters)⁴⁹’라고 하는 온라인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제시하거나 온라인 공격이 명백한 괴롭힘이라고 명시하는 캠페인 문구 등을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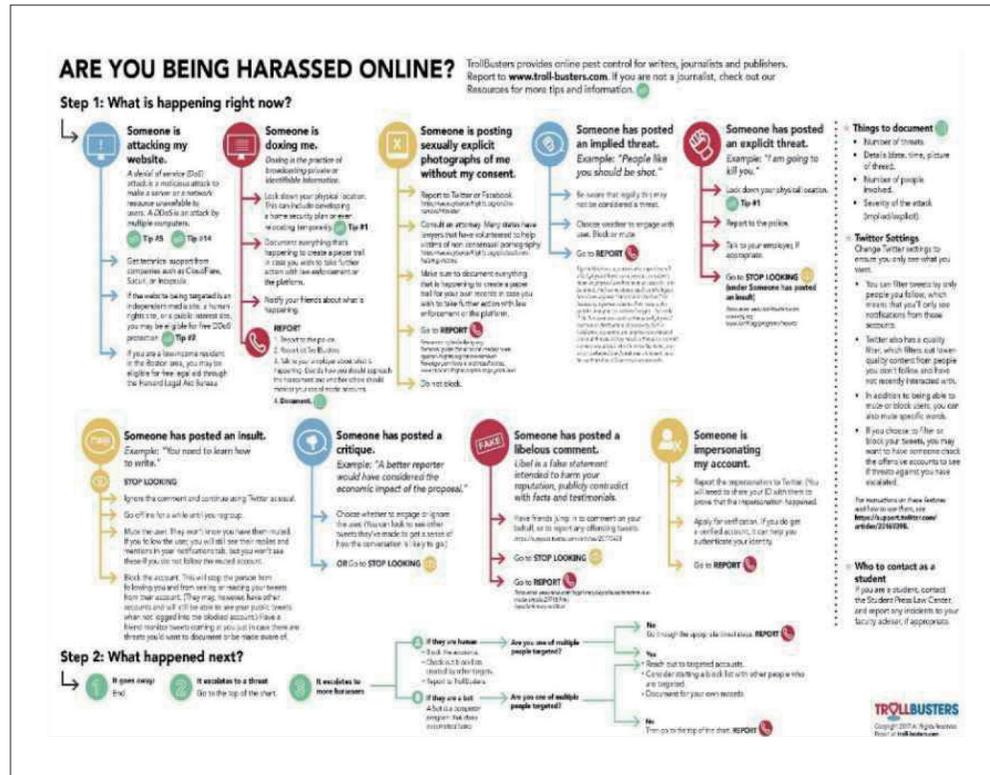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국민, 경향, 한겨레, 조선 등 일간지를 중심으로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공격해 오는 이들에게 회사 차원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경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예방 조치가 시작됐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할 경우 혐오 표현 등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쓰지 않도록 안내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⁵⁰.

일부 회사에서 이렇게 기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뉴스 소비가 주로 이뤄지는 대형 포털의 경우 댓글에 대해서는 특정 안내 문구를 첨부하고 있지만 기자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⁴⁹ Erica Lindsay, 2020, Reporting safely panel offers tips for journalists, <https://mediacollege.wvu.edu/news/media-college-enews/2020/12/18/reporting-safely-panel-offers-tips-for-journalists> 영화 ‘고스트버스터스’에서 따와 트롤(인터넷에서 남들의 화를 부추기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을 해치우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트롤 버스터스’라 이름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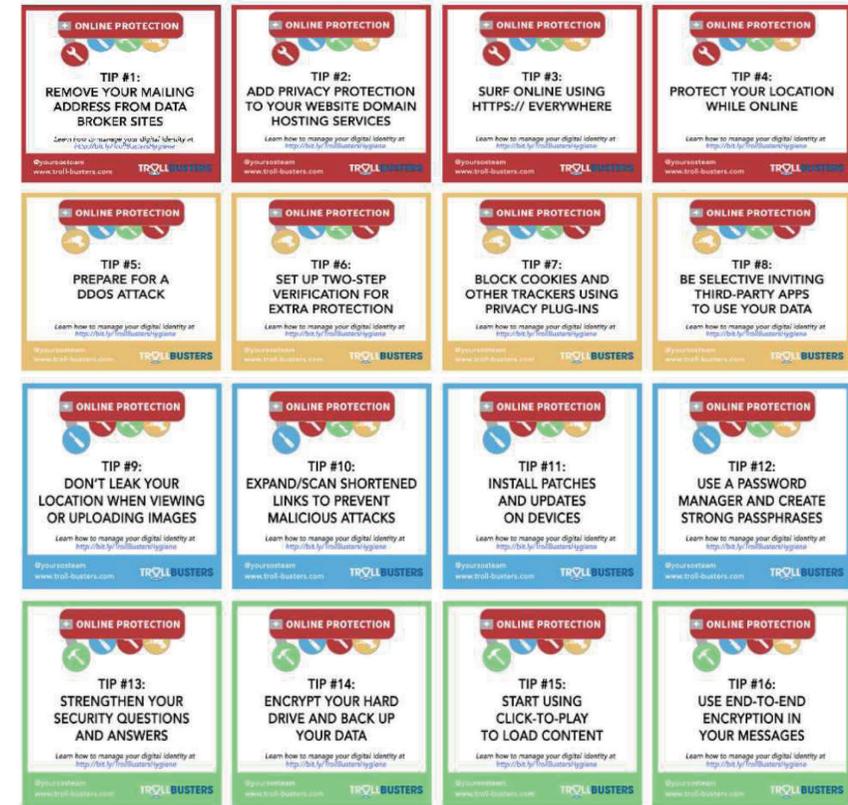
⁵⁰ 김나래, 2022, 공격받는 기자들-보호대책 어디까지 왔나, 관훈저널

〈이미지8〉인포그래픽을 통한 해외 대처 사례 – 조직 대처 방안 안내⁵¹



© 트롤버스터스, troll-busters.com

〈이미지9〉인포그래픽을 통한 해외 대처 사례 – 개인 대처 방안 안내⁵²



© 트롤버스터스, troll-busters.com

개별 언론사 차원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응책을 시도해 보거나 언론사 유관기관과 유관 정부부처, 언론법 관계기관, 소셜미디어·포털 업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언론인 ‘온라인 공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자살 보도에 대해 자살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첨부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온라인 공격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51 〈이미지8〉은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언론인온라인 공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포스터의 예시.

52 〈이미지9〉는 언론인 온라인 공격 시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트롤버스터스 사례 제시.

C. 언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

: 정치인들이 지지자를 동원해 소셜미디어에 특정 기자의 기사를 올리고 소위 ‘좌표 찍기’를 통해 가해를 시도할 경우 명백히 항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언론유관기관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정치인에 경고를 하거나 최소한 성명서라도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자’ 또는 ‘언론인’에 대한 공격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같이 비판하며, 사회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 보도와 관련된 판결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등이 언론인 공격이나 언론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언론법학회 등과의 교류, 또 실제 법조인들을 상대로 언론인에 대한 공격이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등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조하거나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언론사의 평상시 트라우마 대비 방안

A. 개인 차원 대응

: 기자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외상 관리는 기자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기본적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신이 겪은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하기 위해 차 안 등에서 볼륨을 올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활동적인 취미(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의 운동, 춤, 산책 등)를 찾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2021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다투센터, 구글뉴스이니셔티브에서 트라우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트라우마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중복으로 물었을 때 ‘휴가 등 현장과 거리두기’라고 답한 사람이 42.5%로 가장 많았고, 37.9%가 ‘직장 동료나 타사 동료 등 주변인들과 상담’이라고 답했으며 27.3%가 ‘술 또는 수면제 등 약물에 의존’한다고 응답했다. 20.6%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8.6%가

‘병원이나 상담소 등 전문 치료’, 2.8%가 ‘조직 내 관련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답했다. 기타는 5.4%였다.

과거 많은 언론인들은 음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술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 실질적인 스트레스 해소나 트라우마 관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의료진은 조언한다.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를 취재한 경우에는 보도 이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실제로 아주 중요하다. 쉬는 동안에는 뉴스를 확인도 하지 말고, 업무 등과 관련된 다른 연락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것도 추천한다. 실제로 어디 멀리 가지 못한다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꿔 다른 연락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취재기자뿐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다루는 영상 편집자, 디지털 분야 에디터 등에게도 휴식은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이미지를 보는 업무를 20분 단위로 끊어 휴식을 취하고, 소리를 낮추거나 색을 흑백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권장한다. 특히 속보 등의 상황에서 사건이 일단락돼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는 해당 사건과 분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추천한다.

트라우마와 관련해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을 범주화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과 관련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료·선배는 누구인지?’, ‘내가 힘든 개인적인 비밀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직무상 겪는 윤리적 딜레마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동료·선배는 누구인지?’, ‘나의 기쁜 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미리 정해두면 힘든 시기 도움이 된다.

취재원과 선을 긋는 방법도 배워야 한다. 특히 탐사 보도나 심층 기획 취재 시 관계를 맺게 된 제보자 등 취재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만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시로 연락하는 취재원이 있다면 전화해도 되는 시간을 알릴 경우(예를 들면 “나는 2시부터 1시간만 통화 가능하며 30분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릴 경우) 생각보다 그 선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기자는 상담자가 아니며 취재 목적을 위해 취재원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님을 상기시켜야 한다. 기자로서의 나와 개인으로서의 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빠질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³.

B. 언론사 조직 차원 대응 – “트라우마 공감 언론으로 변화해야”

• 조직 차원에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트라우마 교육’ 제공해야

: 트라우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언론인들의 업무의 특성상 언론 조직은 개인이 트라우마 반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인 트라우마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10년 정도 전부터 방송기자연합회와 언론진흥재단 등에서 수습기자과정, 재난재해전문과정 등을 통해 트라우마 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차가 낮은 기자들일수록 트라우마 관련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10년 차 이상, 특히 데스크들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연차와 상관없이 트라우마 관련해 배경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언론 유관 기관 차원에서 언론인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 국내 현실에서는 개별 언론사 차원으로 트라우마 관련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여성기자협회, 닥트센트, 구글뉴스이니셔티브가 공동으로 구성된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언론인트라우마클리닉’을 구축해 왔다.

향후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언론인에 대해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사 리스트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언론법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법무팀이 없는 언론사들이 언론인의 온라인 공격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는 실

제적인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디어 유관기관 차원에서 언론인 트라우마에 대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야 한다.

•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식을 놓고 언론 문화는 진화 중

: 언론계 안에서도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자칫 그림 취재나 보도를 앞으로는 소극적으로 하자는 뜻이나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언론사가 트라우마 이해 기반의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며, 언론의 기본인 취재와 보도는 적극적으로 하되 ‘심리적 외상’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취재원도, 취재진도 보호하는 새로운 언론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이다.

언론인 트라우마 위원회와 안현의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의 언론인 트라우마 회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언론인이 경험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는 조직문화와 관행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언급할 경우 여전히 낙인찍히고, 평판이 나빠질 것으로 두려워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트라우마 이해 기반 조직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

트라우마로 인해 상담을 받든, 부서를 옮기든 이는 언론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개인의 문제나 약해서가 아니며 트라우마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언론의 특성상 나타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지금까지 관행대로 진행해 오던 취재·보도 방식이나 취재 인원 배치, 교체 방식 등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하버드대학 니먼재단에서도 이미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식을 둘러싸고 언론사 내 ‘세대교체’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⁵⁴. 보다 안전한 언론 문화의 육성을 위해 언론인의 트라우마와 정신적 건강까지 돌보는 것이 이제는 ‘좋은 언론사’의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언론문화는 언론이 중심에서 서서, 의학계, 심리학계, 법조계, 미디어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때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⁵³ Cait McMahon, 2019, "Self-care for trauma reporting", Dart Centre Asia Pacific, South Korean Broadcasting Journalist workshop educational material.

⁵⁴ Ann Marie Lipinski, 2023, "An Overdue Generational Shift Is Changing How Journalists Manage Traumatic Stories", <https://niemanreports.org/articles/trauma-reporting-itaewon-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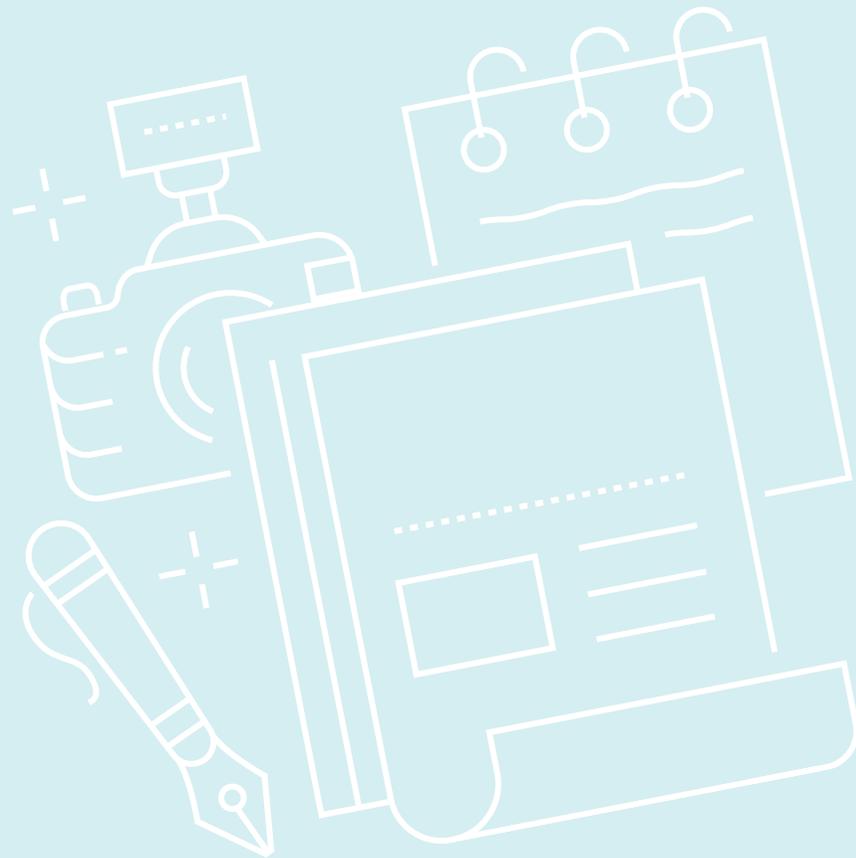
03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2.0’을 위한 추후 논의 과제

[별첨]

뉴스룸 내 동료의 죽음이 발생한 경우

[참고문헌]



3.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2.0’을 위한 추후 논의 과제

1)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 어떻게 활용, 전파, 유통할 것인가?

— 100배 활용법: 동료 간 지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같은 회사 내 선후배 간 그룹, 같은 출입처 내 타사 동료들 그룹, 언론사 준비 학생들 간 그룹 등)

2) 언론의 취재, 보도 관행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모범 기사 사례는?

— ‘트라우마 공감 언론’이 되기 위해 취재, 보도의 관행은 무엇이 바뀌어야 하며 트라우마 이해 기반 언론이 작성하는 기사는 뭐가 다른지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3)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조직문화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언론사의 공채 제도, 도제식 수습과정, 부서 배치 결정의 배경 등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무엇보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4) 언론사에도 일반기업의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⁵⁵) 같은 복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까?

5) ‘언론인 트라우마 가이드북 1.0’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부상한 게 얼마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연차가 많은 언론인부터 교육받는 것 권장.

6) ‘언론인 온라인 괴롭힘’ 대처를 위한 방안은?

— 포털 등 온라인 유관 기관, 언론법학회 등과의 콜라보 통해 법무팀이 없는 언론사들이 향후 언론인 온라인 괴롭힘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미디어 유관기관이 추후 언론인 위한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확장해야.

7)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도 언론인 트라우마의 범주에 포함해야 할까?

— 최근 다트센터에서는 프리랜서 언론인들의 트라우마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성폭력, 성희롱 예방도 트라우마 교육 카테고리 포함하기 시작.

⁵⁵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은 직무 스트레스, 근로자의 건강, 부부 및 가족생활 문제, 법률 및 재정 문제,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서적 문제 등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심리 상담, 컨설팅, 코칭 등의 프로그램이다.

[별첨] 뉴스룸 내 동료의 죽음이 발생한 경우⁵⁶

해외 언론은 전쟁이나 테러, 재난, 사건사고 등 취재 현장에서 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해 애도 관리 방안 등을 정해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사건, 사고, 질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언론인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있었다. 하지만 뉴스룸 내 동료의 죽음을 둘러싸고 공론화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여기서는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관련 연구해 온 대표적 기관인 닥트 센터의 제안을 소개한다.

함께 일하던 동료의 사망은 구성원을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애도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와 일터로 복귀하며 다시 시작하는 회복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동료의 죽음에 대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 상황에 맞게 함께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거나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권장된다.

언론사는 다른 조직과 달리 어떤 상황에서도 뉴스 생산이라는 업무를 멈출 수 없다. 비극적 사건에도 신문을 만들고 방송을 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애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애도 단계를 건너뛴 경우 조직 내 혼란과 불안감이 더 지속될 수 있다. 반드시 조직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적 결속력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료의 사망 소식을 알릴 때에는 다른 곳에서 정보가 공개되기 전, 개별적으로나 또는 뉴스룸 차원의 회의를 소집해 직접 알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메일로 알리는 것은 가급적 가장 마지막 단계로 고려한다. 그럼에도 사정상 이메일로 전달해야 할 경우 내용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제목에 알려야 한다.

관리자들은 동료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1. 장례식과 관련, 직장 내 추모식을 별도로 진행할지, 하게 된다면 누가 주관하며, 그럴 경우 업무에서 어떻게, 얼마 동안 제외시킬지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가 중요하며, 언론사가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느낄 경우 가족들이 언론사에 적대적일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2. 고인의 책상이나 쓰던 물품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한다. 고인이 쓰던 책상을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
3. 취재 중 사망한 경우 후속 업무를 누구에게 맡길 지도 판단해야 한다. 특별히 사망을 초래한 영상이나 사진 이미지 등이 있을 경우 내부 서버에 저장되지 않도록 하거나 민감한 자료의 경우 암호화하고 별도 보관한다.
4. 유족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없다면 어떤 식으로 지원할지 고려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 장례 이후 기자 개인의 이름으로 기금이나 기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

사고사가 아닌 자살 등 사안에 따라서는 정신건강 전문가의 자문 또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괴로워하는 직원과의 상담 등을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언론인은 회복력이 강하지만 동료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부는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조직 내 구성원 전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누가 동료의 상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다.

⁵⁶ Dart Centre for Journalism and Trauma, 2015, "TV Reporter & Cameraman Killed During Live Broadcast", <https://dartcenter.org/blog/tv-reporter-cameraman-killed-during-live-broadcast>

1. 통상적으로 고인과 가까웠을수록,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에 더 많이 관여되어 있을수록 위험이 높아진다.
2. 연차가 낮은 경력 초기의 동료들(특히 사망한 언론인과 강한 멘토링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수년간 상대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사고에 더 많이 노출된 연차가 더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
3. 동료의 죽음에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사건의 여파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사건발생 4~6주가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학적인 도움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문제가 되는 반응은 4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4. 도움이 필요한 직원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는 개인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 더 큰 영향을 입은 직원의 경우에는 업무를 경감하고 애도를 표하기 위해 휴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경우라도 너무 멀리 긴 휴가를 가는 것은 고립감을 높일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참고 문헌

-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 김나래, 2022, 공격받는 기자들-보호대책 어디까지 왔나, 관훈저널
- 김달아, 2022, “기자 10명 중 8명 “일 하면서 심리적 트라우마 겪었다”, http://m.journalist.or.kr/m_article.html?no=51308
- 박동혁, 2017, “재난뉴스 이용이 간접외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박재영, 2020, <뉴스 스토리: 내러티브 기사의 작법과 효과>, 서울:이체
- 박지은, 2022, “지상파 3사·YTN “이태원 참사 현장 영상 사용 자제하겠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2417>
- 방송기자연합회, 2019.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저널리즘 아카데미 전문취재기자과정 연수보고서
-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2022, “이태원 참사 관련 기자 트라우마 대응 방안 안내”, <http://reportplus.kr/notice/%EC%9D%B4%ED%83%9C%EC%9B%90-%EC%B0%B8%EC%82%AC-%EA%B4%80%EB%A0%A8-%EA%B8%B0%EC%9E%90-%ED%8A%B8%EB%9D%BC%EC%9A%B0%EB%A7%88-%EB%8C%80%EC%9D%91-%EB%B0%A9%EC%95%88-%EC%95%88%EB%82%B4/>
- 배정근, 하은혜, 이미나. 2014. 언론인의 외상성 사건 경험과 심리적 외상에 관한 연구: 세월호 참사 취재 기자를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vol.58, no.5, pp. 417-445
- 안현의 외, 2023, 언론인트라우마 회복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아직 미발표)
- 이정애. 2009. 탐사보도의 취재·제작 관행과 취재원의 ‘피해 관련 태도’의 관계 유형에 관한 연구-취재대상이 사건 피해자인 경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방송영상전공.

참고 문헌

- 이정애, 2023, '트라우마 감수성'을 중심으로 언론문화는 세대교체 중, 방송기자 1, 2월호 (통권 70호)
- 한국언론진흥재단-구글뉴스이니셔티브, 2022, 코로나19 -언론인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 1.0.
- 한국언론학회-삼성언론재단, 2022, 봄철 정기학술대회, 언론 혐오의 시대, 언론의 대응 방안 모색,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https://www.youtube.com/watch?v=tqzo1U3i6FI&ab_channel=%EC%82%BC%EC%84%B1%EC%96%B8%EB%A1%A0%EC%9E%AC%EB%8B%A8
-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연구회, 2022, <저널리즘 다시 보기>, 파주: 나남
- Ann Marie Lipinski, 2023, "An Overdue Generational Shift Is Changing How Journalists Manage Traumatic Stories", <https://niemanreports.org/articles/trauma-reporting-itaewon-korea/>
- Autumn Slaughter, Elana Newman, 2020, "Journalists and Online Harassment", <https://dartcenter.org/resources/journalists-and-online-harassment>
- Dart Centre Asia Pacific, 2020, "Leading Resilience: A Guide for Editors and News Managers Working with Freelancers Exposed to Trauma", <https://dartcenter.org/resources/leading-resilience-guide-editors-and-news-managers-working-freelancers-exposed-trauma>
- Dart Centre Europe, 2021, "Reporting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https://www.coveringcrsv.org/wp-content/uploads/2021/05/CRSV_Downloadable_UK_FULL.pdf Dart Centre for Journalism and Trauma, 2009, "Tips for Managers and Editors", <https://dartcenter.org/content/tips-for-managers-and-editors>
- Dart Centre for Journalism and Trauma, 2015, "Death in the Newsroom: Tips for Managers", <https://dartcenter.org/content/trauma-in-newsroom-for-news-managers>

- Dart Centre for Journalism and Trauma, 2015, "TV Reporter & Cameraman Killed During Live Broadcast", <https://dartcenter.org/blog/tv-reporter-cameraman-killed-during-live-broadcast>
- 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 2023, "Truth and Repair: How Trauma Survivors Envision Justice", <https://youtu.be/nUcSV-9mEmM>
- Erica Lindsay, 2020, "Reporting safely panel offers tips for journalists", <https://mediacollege.wvu.edu/news/media-college-enews/2020/12/18/reporting-safely-panel-offers-tips-for-journalists>
- Farz Edraki and Damien Carrick for The Law Report, 2019, "Trauma of news journalism in focus after The Age found responsible for reporter's PTSD", <https://www.abc.net.au/news/2019-03-22/ex-age-journalist-awarded-damages-for-ptsd-world-first/10896382>
- Kimina Lyall, 2022, "Interviewing in the aftermath of trauma", <https://dartcenter.org/resources/interviewing-aftermath-trauma>
- Isobel Thompson, 2021, "Dart Center Style Guide for Trauma-Informed Journalism", <https://dartcenter.org/resources/dart-center-style-guide>
- SAMHSA(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2015, Trauma-Informed Care in Behavioral Health Services, <https://store.samhsa.gov/sites/default/files/d7/priv/sma15-4912.pdf>
- SBS 미래팀, 2023, "영국 힐즈버러 참사 생존자가 보내온 편지",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R_zmwLIXuhxARgMkhYHm3GosOX0RYHw=

